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280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4항제8호 신설).

[illegible]

현행	개정안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u><신설></u>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③ (생략)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u>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대안교육기관</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현행	개정안
1. ~ 7. (생략) <u><신설></u> ⑤ · ⑥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u>대안교육</u> <u>기관</u> ⑤ · ⑥ (현행과 같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써,

기관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은 성범죄자의 해당 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¹⁾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²⁾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³⁾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대신하여 선택하는 교육기관임. 2024년 6월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56개임.

<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8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4	7	6	11	11	7	6	256

자료: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현황(2024.6.18.)”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상 각급 학교와 유사하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2)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 ⑤ (생략)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즉, 대안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보이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제한 규정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교원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은 해당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